

제198회 영등포구의회
2016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民 基

『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80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	지방세제개편 등 연구	17,423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1)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,
-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 및 제1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.
- 사업내용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,
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임.
-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. 따라서,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는 것임.

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세기본법

제145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46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